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의무 부과 〉

■ 이견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08호)

2025.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의무 부과	2

I. 제안경위

2025년 9월 5일 이견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사례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거나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공표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작성·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권침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Ⅲ. 검토의견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의무 부과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차별 금지) (생략) <신설>	제22조(차별 금지 등)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용자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

근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강제로 묶인 채 끌려다니는 가혹행위 영상이 공개되는 등 사용자 뿐 아니라 사업장 내 같이 근무하는 내국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외국인근로자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가 단순히 기피 업종에서의 노동력 제공 수단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 이들의 인권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고용노동부도 현재 외국인근로자 노동관련 실태조사가 부분적·간헐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향후 정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증적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계절근로, 전문인력, 영주, 동포비자 등 모든 체류자격(불법체류)을 포함한 통합적 실태조사 실시 필요함에도 체류자격별로 관리주체가 달라,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적용 대상인 고용허가제에 한정되어 정기 실태조사가 실시되어도 통합적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전국적인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상당한 수준의 외국어를

구사하면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진솔한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과 상당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므로 시행시기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